

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97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3. 25 .

발 의 자 : 유승용 의원 외 4인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김재진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등포구청과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친인척에게 알선하는 등 영등포구의회 의 명예를 손상시켰기에, 해당 의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7조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위원수는 9명 이하로 하고,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징계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로 함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7조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28조 및 제31조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72조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」 제2조, 제3조, 제4조